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9 | 2024.11.04. (2024.10.28~11.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8~11.0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쏠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4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는 정보보호 기업의 규모, 매출,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고령인구의 주거·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검색 엔진·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5인)**」,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7인)**」 ,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개발·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의원 등 11인)**」 ,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22인)**」 ,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2인)**」 ,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1/4(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기재위>, <교육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국토위> 및 <예결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보건복지부) 8
- 「2024년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보건복지부)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7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8
-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8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5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3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3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34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의원 등 11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3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3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3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3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3인)	3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7인)	4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4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41
•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의원 등 11인)	4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43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44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22인)	44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5인)	45
•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2인)	4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4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4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4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48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4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5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5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5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5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5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5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5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5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5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5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5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5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5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8~11.3) [바로가기](#)

-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 Vol.1 (2024년 10월)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8 (2024년 10월 5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 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 - 바이오 경제,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 결정,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 신설 - 레드, 그린, 화이트 등 바이오 전(全) 분야에 대해 국가 비전·방향성 제시	2024-10-28
-------	---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음.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음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임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됨.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둘째, 위원회는 ①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②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③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④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⑤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⑥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⑦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⑧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음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여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매출액, 수출액, 인력 현황 등 조사
- '23년 기준 정보보호 산업 규모는 16.8조 원, 전년대비 4% 성장

2024-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4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는 정보보호 기업의 규모, 매출,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정보보호산업 개황 >



조사 결과,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708개사로 전년도 1,594개사보다 약 7.2% 증가**했으며, 그중 정보보안 기업은 814개사(전년 대비 10.4% ↑), 물리보안 기업은 894개사(전년 대비 4.3% ↑)로 나타났다고 밝힘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6조 8,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으며, 정보보안 약 6조 1,455억 원(전년 대비 9.4% ↑)과 물리보안 약 10조 6,856억 원(전년 대비 1.2% ↑)으로 조사되었음. 정보보안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해결책(솔루션), 보안 체계 유지관리·보안성 지속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리보안 분야는 출입통제 장비 등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출동·영상보안 서비스 등의 매출이 감소하였음

'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수출액은 약 1조 6,800억 원으로 16.3% 감소**하였으며, 정보보안 약 1,478억 원(전년 대비 4.8% ↓), 물리보안 약 1조 5322억 원(전년 대비 17.2% ↓)으로 조사되었음

정보보안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해결책(솔루션)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보안 자문 및 보안관제 서비스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물리보안 분야는 보안용 카메라, 보안용 저장장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생체인식 보안체계의 경우 전년에 이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23년 정보보호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총 60,308명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으며, 정보보안 종사자 수는 23,947명(전년 대비 4.1% ↑)으로 증가한 반면, 물리보안 종사자 수는 36,361명(전년 대비 13.1%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산업에서는 기술의 혁신과 인적 자원의 고도화,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써,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 특화단지 지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수소도시 2.0 추진 등 주요안건 심의

2024-11-01

정부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음. 정부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음

금번 위원회에서는 ①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②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③수소도시 2.0 추진 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음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 ①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

- ②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글로벌 수소 운송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7년까지 실증 선박을 건조하고 '30년까지 육해상 운항을 통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40년까지 스케일업을 통해 대형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
 -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지원할 예정
- ③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수소시범도시('20~'24)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다양한 수소 생태계를 구현해 내기 위한 새로운 수소도시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임
- 도시 내에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산업(산업단지 등)·문화(문화센터 등)·복지(실버타운 등) 등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는 한편, 수소트램, 수소트럭 등 수소교통 인프라도 확충하여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29 시행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여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국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업용 종묘 생산업 등의 업체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이나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예정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01 시행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4-11-01 시행
-----------	---------------------------------	---------------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양자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의 방법 및 보안위협요소의 검토,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의 방법 및 보안위협요소의 검토 등 (제10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조사, 영향 평가, 시나리오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한 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한 대응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④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고 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중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등을 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업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경력 등 규정 (제126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등의 범위에 원자력발전소 운전 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경력 등을 포함하고, 실무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하면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제155조의2)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업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29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 용역업자로 정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29 시행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등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정하고, 근로능력과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노인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함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기준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 또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② 취업 지원의 기준 및 지원 내용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과 취업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적성·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 취업을 위한 소양·직무 교육 등으로 정함

③ 현장실습 훈련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 (제7조)

-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업종을 영위할 것,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등으로 정함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사업에 참여할 노인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등으로 정함

④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8조)

-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12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9. ~12.09.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위험도 분류 (안 제4조)

- 충분한 연구자료 축적 등이 이뤄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도를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함

②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기준 (안 제10조)

- 실시계획의 준수, 인체세포등의 안전 관리, 치료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치료 실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③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제출 및 심의 (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신청 시 작성해야 할 내용과 제출자료를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함

④ 첨단재생의료 실시 자료 요청 (안 제14조의2 및 제16조)

- 심의위가 재생의료기관에 첨단재생의료 진행 상황, 실시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안전관리기관 등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안 제15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4개 분야별 전문위 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⑥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 (안 제16조)

- 심의위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시 법률에서 정한 안전성, 유효성 등 외에 치료대상자 적합성, 치료 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⑦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안 제23조)

- 안전관리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안전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 외에도 정보시스템 운영,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 분석·평가 등을 하도록 함

⑧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 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치료와 그에 유사한 치료의 중지,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⑨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안 제41조)

-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치료 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등을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41\)](tel:044-202-2822)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0.29.
~12.09.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의 위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임 사항으로 추가

②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2항)

-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 임상문헌을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

③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9항)

- 위원회의 검토사항인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기준에 시급성을 추가

④ 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11항)

- 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의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의3)

-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 선진입 기술에 대해 환자 등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화
-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위해 수준에 대해 퇴출 기전 마련

⑥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의4)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유예 연장 신청 시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규정 마련

⑦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⑧ 의료기술 재평가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의3 신설)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tel:044-202-2456)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8.
~12.09.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 (안 제30조제3항)

- 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7.12.31.까지 부과 면제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전화: 044-200-5248\)](tel:044-200-524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29.
~12.09.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 (안 제54조제1항)

-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문의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271, 팩스: 044-201-7284\)](tel:044-201-727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30.
~12.09.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안전·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다만,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81,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31.
~12.11.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익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및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18조 제1항 및 제7항)
- ② 창의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공급 토지공급 규정 명확화 (안 제57조 제5항)
- ③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토록 명확화 (안 제61조 제2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전화: 044-201-3740, 팩스: 044-201-5657)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31.
~12.11.

공모 선정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의 방법 및 공급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개발계획 동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재취득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별설계 공모에 대한 토지공급 기준 구체화 (안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②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mailto:city@kda.go.kr) (전화: 044-201-3740, 팩스: 044-201-565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	-------------------------	---------------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2024-10-28 발의
-------	---	---------------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임.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중개 · 검색 엔진 · SNS · 동영상 · 운영체제 ·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 ②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관련 필요사항을 별도의 장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안 제2장의2 신설)

- ③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반경쟁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함 (안 제8조의3 신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4 신설)
- 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⑦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8조의2 신설)
- ⑧ 제2장의2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벌칙 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 (안 제125조제1호, 제130조제1호 및 제130조제9호)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4-10-28 발의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음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급성장해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노정하였음. 이 사태로 인한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가 4만 8천여 개 사에 이르는 등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추가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이 법상의 의무를 부과함 (안 제2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받거나 청약접수의 지원을 하는 자 중 중개거래 수익(중개거래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통신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국내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함
 -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안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안 제8조의2), 그 밖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한 의무(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을 적용함
- ③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 ④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

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호가목)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10-31 발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안 제12조의2 신설)

-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 (안 제26조제3항 신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44조)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 (안 제44조의2)
- 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2024-10-31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4-10-31 발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 (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또한,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함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안 제55조제1항)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안 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③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안 제76조의22)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제5항)

-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⑥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5인)

2024-10-28 발의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024-10-28 발의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0조·제24조·제46조의8·제63조·제74조·제87조·제91조의18·제91조의22·제100조의3·제104조의31·제107조의2·제108조의3·제109조·제122조의3·제126조의2·제146조의2 및 제92조·제98조의9·제99조의14·제104조의34·제106조의11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2024-10-29 발의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024-10-29 발의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3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앞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 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앞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앞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바,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024-10-30 발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를 건인('22년 기준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8%,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25%)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의 대·중견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일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수입금액 대비 일반 R&D 비용 $\times 1/2$ '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2%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출액(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이스포츠에 투자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경기 횟수 중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30%를,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7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중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 (안 제12조제3 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024-10-31 발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36조제6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수입·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2024-10-28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3인)

2024-10-29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②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안 제4조의2 신설)
- ③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안 제87조)
- 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 (안 제106조)
- ⑥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단체 또는 편성위원회로부터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8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7인)

2024-10-29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 등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 보편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들의 이용이 폭증하고 핵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해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직접 제공함에 따라 제도의 홍보에 소홀하며, 이에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 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안 제4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

또한, 최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해당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등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5인)

2024-10-30 발의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시켰고, 미국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분류해 자국 내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작하고 있음. 더욱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 재편 및 에너지 원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음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원자로가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선진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고효율의 원자로로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이미 자국 내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선진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민간의 선진원자로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이미 마련하였음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원자로의 조속한 연구·개발·실증이 필요하며, 개발되는 선진원자로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미 선진원자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유망 해외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30년경에 도래할 선진원자로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음. 이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선진원자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 선진원자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개발·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31 제출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12세·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임에도 개발계획의 제안·공모에 따른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므로 그 개념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취득세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 부대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22인)

2024-10-31 발의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2024-10-29 발의

전세계적으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풍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2
인)

2024-10-30 제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음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로 하여금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하며,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원전수출사업자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두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⑥ 기타 원전수출사업자 등의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둠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
인)

2024-10-24 발의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함 (안 제2조제4호)
- ②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4-10-31 발의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2024-11-01 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7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2024-10-30 발의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조의2제4호의2·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철의 삼각(Iron Triangle for Healthcare)을 극복하고 미래 첨단의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또한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 달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화하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보급률은 90%가 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미래 첨단의료 발전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안전 달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안 제13조의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10-30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3, 제76조의4 · 제76조의5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4-10-31 발의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보편적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10-31 발의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자의 업무와 자녀의 선천성 건강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법상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했음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 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이에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함 (안 제91조의12)
-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종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애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함 (부칙 제2조 단서)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10-31 발의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2024-10-28 발의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 ② 시·도지사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 ③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 ④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약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⑥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사채나 주식 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20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10-28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부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안전성을 검사·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8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2024-10-2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도급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 제한을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31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② 「형법」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안 제39조제5항제5호)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7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의원 등 10인)

2024-10-30 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제1항)
- ②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 ③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57조의2제1항)
- ④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2024-10-31 발의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4(월) 10:00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1/4(월) 11: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고유법 상정
		11/8(금)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고유법 의결
	법안1소위	11/5(화) 09:30	고유법 심사
	예결산소위	11/6(수)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1/7(목)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11/6(수)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예결산소위	11/7(목)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11/5(화) 14:00	법률안 의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외통위	전체회의	11/7(목) 09: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법률안 상정, 동의안 현안보고
	법안소위	11/8(금) 10:00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1/7(목) 14: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고
	예결산소위	11/8(금)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11/7(목) 09:3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11/6(수)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7(목) 14:00	예산안 상정 등
예결위	전체회의	11/7(목)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8(금) 10: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4(월) 14:00	2024년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 세미나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4(월) 14:00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이현승·황 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4(월) 14:00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전력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	정진욱·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1/5(화) 14:00	[한국환경회의의 포럼 4차]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5(화) 14:00	건축사 자격제도 60년 이대로 좋은가?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6(수) 14: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	서왕진·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1/7(목) 13:30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서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7(목) 14:30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구축과 방어양식산업 성공전략 정책간담회	박형수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1/8(금) 15:00	[제1회 보훈의료 정책 포럼] 미래 보훈의료의 나아갈 길	인요한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1/4(월)	「THE 현안」제32호(2024-3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59호(2024-21호) 발간		
	11/6(수)	「금주의 서평」제702호(2024-43호) 발간		
	11/5(화)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8(금)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개최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6(수)	[세미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8(월)	「THE 현안」제31호(2024-31호)	국회도서관	
	10/30(수)	「금주의 서평」제701호 - 도서명 : 솔로 에이저 - 저자 : 사라 제프 게버		
	10/31(목)	「현안, 외국에선」2024-22호(통권 제94호)		
	10/28(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10/29(화)	재정전망 및 조세분석 보고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28~11.0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01(금)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1/01(금)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 Vol.1 (2024년 10월)
11/01(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8 (2024년 10월 5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